

사회복지법인
원주종합사회복지재단

2018년
제1차 임시이사회 회의록

- ◇ 회의 알림일 : 2018년 1월 16일(화)
- ◇ 회의 개최일 : 2018년 1월 23일 17:10~17:40
- ◇ 이사회장소 : 원주시 육판길 1(태장1동) 회의실
- ◇ 회의 참석자 : 총 이사 8인 중 8인 참석(감사2인 배석)
 - 참석자 명 : 이사장 : 김원화, 이사 : 권원식, 김광권, 김영일,
박순모, 안병표, 원준호, 최효순
 - 배석자 명 : 감사 : 길재민, 서동표
사무국장 최병진

사회복지법인 원주종합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원주종합사회복지재단 2018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 회의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18년 1월 23일(화) 17:10 ~ 17:40

◇ 회의장소 : 원주시 육판길 1(태장1동) 회의실

◇ 회의사항

1. 소집알림일 : 2018. 1. 16.

2. 참석자 : 재적이사 8인중 8인 참석

참석이사 8인 : 김원화, 권원식, 김광권, 김영일,

박순모, 안병표, 원준호, 최효순

배석 : 감사 : 길재민, 서동표, 사무국장 최병진

3. 심의의안

전차회의록 처리

제1호 의안 우리재단 정관 변경(원주시 승인-2017.4.12.)건 의결함.

제2호 의안 우리재단 세칙(2017.4.12.정관반영) 제정건 의결함.

제3호 의안 자신보육원장 선임 및 임기연장의 건 의결함.

제4호 의안 원주종합사회복지관장 선임 및 임기연장의 건 의결함.

제5호 의안 우리재단 소속시설 법인전출금 승인의 건 의결함.

기타 사항

· 선임 승인 시설장에 대한 임용장 수여함.

· 2017년도 종합감사 2018.2.27.(화) 시행키로 함 .

· 2018년 정기이사회 2018.3.7.(수) 개최키로 함.

■ 의장 : 김원화 이사장

■ 사회 : 안병표 담당이사

■ 기록 : 최병진 사무국장

2018년 제1차 임시이사회 회의록

1.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17:10)

(의장 김원화 이사장) 본 회의는 17시 10분 김원화 이사장(대표이사)이 의장으로 진행 하다.

(사회 안병표 담당이사) 사회는 재적이사 8인 중 8인 모두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다.

(의장) 개회를 선언하고 법인(재단) 발전을 위해 수고한 이사, 감사분의 노고에 감사 를 표하고 또한 지난 해 소속 시설인 자신보육원과 원주종합사회복지관의 결산 금액 증액과 시설 운영을 위해 수고한 시설장과 직원들의 노고에도 격려인사를 하였으며 참석한 이사분들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다.



2. 전차회의록 처리

(의장) 의장은 사회에게 전차회의록 주요 의결사항을 낭독하도록 하고, 재적이사 전원 이 참석하였으며, 이미 회의록에 도장을 날인하여 인터넷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는 바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전차회의록이 원안대로 처리되었음을 선언 하다.

3. 부의사항

보고사항

가. 우리법인

2017.12.21. 2017년 제3차 임시이사회 의결사항(임원 선임, 시설장 공개채용 진행)
임원등기 및 공개채용 절차 진행함.

나. 원주종합사회복지관

2018.1.5. 여성가족부 '청소년방파후 아카데미' 중학생 20명 운영 위탁 결정 통보
2018.1.9. 정규직 직원 2인 공개채용 공고(세탁차량 담당 1인, 방파후아카데미 1인)

(사회) 의장의 보고사항 주문에 따라 사회는 위 보고사항 기록내용을 낭독 보고하다.

심의사항

제1호 의안 정관 변경(원주시 승인-2017.4.12.)건

(의장) 우리 법인 정관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사회자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사회) 우리법인 2017년 제3차 임시이사회 제5호 의안으로 승인 가결한 정관(안)의 신·구 대비표(2017.4.12.)를 회의록에 잘못 기록(2017.4.6.)하여 원주시 복지정책-11275호로 최종 승인된 신·구 대조표로 정정하였음을 설명 보고하다.

(상임이사 원준호) 회의록에 최종 수정본을 잘못 기록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주무관청 승인된 정관안대로 승인하자는 의견을 말하다.

(이사 박순모) 동의하다.

(이사 권원식) 재청하다.

(참석이사 전원) 모두 재청하다.

(의장) 본인도 찬성하므로 참석이사 모두 일치된 의견으로 주무관청의 변경승인안대로 다음과 같이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우리재단 정관 변경(원주시 복지정책과-11275호, 2017.4.12. 승인)건

가. 신·구대비표

현 행	주무관청 변경승인(2017.4.12.)(안)
제1장 목적 및 사업	제1장 총칙
제1조 본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에 규정한 아동복지시설운영 및 사회복지관 운영과 영유아보육법 제2조 2항의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함으로서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 ----- -----
제2조 본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u>육아시설인 자신보육원의 설치운영 관리사업</u> 2. <u>원주종합사회복지지관의 운영사업</u>	제2조(사업) 이 ----- ----- 1. <u>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설치운영</u> 2. <u>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의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u>

현 행	주무관청 변경승인(2017.4.12.)(안)
3. 보육시설인 소망어린이집의 운영관리 사업 4. <생략>	3. < 삭제 > 4. <현행과 같음>
제2장 <생략>	제2장 <현행과 같음>
제3조 본 법인은 사회복지법인 <u>원주종합</u> <u>사회복지재단</u> 이라 칭한다.	제3조(명칭) 이 ----- <u>원주종합</u> <u>사회복지재단</u> (이하 “법인”이라 한다).
제4조 본 법인의 사무소는 강원도 원주시 <u>육판길 1</u> 에 둔다.	제4조(사무소) 이 ----- --- <u>육판길 1(태장1동 729-3번지)</u> -----
제3장 자산 및 경리	제3장 ----- 회계
제5조 본 법인의 자산은 별지 재산목록의 재산 및 기타 수익으로 한다.	제5조(자산) 이 ----- ‘별표1’ -----
제6조 본 법인의 자산은 기본 자산과 보 통자산으로 구분 관리한다. 기본자산은 별지 기본재산 목록의 재산 및 장래기본재산으로 취득되는 재산으 로 하고 보통재산은 그 외에 재산으로 한다.	제6조(자산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 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이 법인이 취득하고 있거 나 취득할 부동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그 외에 재산으로 한다.
제7조 본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각, 기부, 담보, 양도, 교환 등 기타 처분하고자 할 시는 이사전원의 동의를 얻어 주무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기본재산의 관리) ①이 법인의 기본 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또는 담 보에 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는 재적이사 3분의 2(소�数점 이하는 버림) 이상의 찬성 의결을 거쳐 주무관 청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이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 이 이를 법인의 개산으로 편입하여야 한 다. ③ 제2항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 법인은 그 취득사유, 취득재산의 종류, 수량 및 가액을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의 재산취 득 사항과 함께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현 행	주무관청 변경승인(2017.4.12.)(안)
	<p><u>장기 차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u></p> <p><u>⑤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이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u></p>
<u>제8조 본 법인의 경비는 보통재산으로서 이를 충당한다.</u>	<삭제>
<신설>	<u>제8조(수익자금예치) 이 법인의 예산중 현금은 우편관서나 금융기관에 예치함을 원칙으로 한다.</u>
<u>제9조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년도에 의거한다.</u>	<u>제9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u>
<u>제10조 본 법인의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대표 이사가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u>	<u>제10조(사업계획 및 예산)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대표이사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이하 ‘재무·회계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u>
<u>제11조 본 법인의 결산은 대표 이사가 매 회계연도 미경과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고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u>	<u>제11조(사업실적 및 결산)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1월 이내에 대표이사가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3월 31일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u>
<u>제12조 본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결산 잉여금은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기로 한다.</u>	<u>제12조(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의 회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u>

현 행	주무관청 변경승인(2017.4.12.)(안)
제4장 <생략>	제4장 <현행과 같음>
<p>제13조 본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이사 7인 이상 10인 이하(대표이사 및 사외이사 포함) 3. 감사 2인 <p>필요에 의하여 전 항 임원 이외에 상임 이사와 담당이사 각 1인을 둘 수 있으며, 상임이사와 담당이사는 대표이사가 선임된 이사 중에서 지명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p>	<p>제1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이사 8인(대표이사, 상임이사, 담당이사, 사외이사 포함) 3. 감사 2인
<p>제14조 전조 1항의 임원은 임기완료 1개 월 전에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취임하고 지방자체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신설></p>	<p>제14조(임원의 선임) ①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상임이사 및 담당이사는 대표이사가 선임된 이사 중에서 지명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③ 이사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림) 이상은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④ 이사를 임면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한다.</p> <p><신설></p>
<p>제15조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본 법인의 중요업무를 의결한다.</p>	<p>제15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라 한다)가 이사 협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p>
<신설>	<p>제16조(임원의 취임) 제14조 제1항의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하고 주무관청에 임면사항을 제출한다.</p>
<p>제17조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본 법인의 중요업무를 의결한다.</p>	<p>제17조(이사회 임무) ----- 구성하고 이 법인의 중요정책과 중요업무를 심의</p>

현 행	주무관청 변경승인(2017.4.12.)(안)
	<u>결정한다.</u>
제16조 대표이사는 본 법인을 대표하고 사업을 통리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단, 대표이사 부재 시는 상임이사가 차를 대리한다.	제18조(대표이사) ① 대표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여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대표이사가 결원일 때는 이사회는 자체 없이 대표이사를 보선해야 한다. ③ 대표이사가 유고시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가 없을 시에는 이사 중 최 연장자 순으로 그 대표이사의 직무를 수행한다.
<u><신설></u>	제19조(상임이사) 이 법인의 상임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의 의결사항 집행과 법인 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업무를 처리하며, 이 법인 인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으로서 그 직무를 처리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u><신설></u>	제20조(담당이사) ① 이 법인의 담당이사는 상임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주요 집행사항 및 처리 업무에 대해 보고한다. ② 상임이사가 없을 시 담당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인사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그 업무를 처리한다.
제17조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없으며,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법인 업무집행의 상황 감사 2. 재산 및 경리 상황의 감사 3. 전 1, 2호의 결과 부정한 점을 발견하였을 시는 이사회 또는 주무장관에게 보고한다. 4.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는 대표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청한다.	제21조(감사) ----- 있으며, ----- 1. 이 법인 운영과 업무집행에 관한사항 감사 2. ----- 회계 ----- 3. ----- 부정 또는 불비한 점----- 때에는 이사회와 주무관청에 -----. 4. 제3호 ----- - 때에는 -----.
<u><신설></u>	제22조(대표권의 제한) 이 법인의 대표이사

현 행	주무관청 변경승인(2017.4.12.)(안)
	<u>이외는 이 법인을 대표하지 않는다.</u>
<신설>	제23조(임원의 대우) 이 법인의 이사는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본 법인 임원의 임기는 이사는 3년, 감사는 2년으로 하고 재선될 수도 있다.	제24조(임원의 임기 등) 이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신설>	제25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법인의 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신설>	제26조(임원의 해임) ① 이 법인은 그의 임원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해임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인은 그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령,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때 3. 직무태만·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4. 기타 임원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19조 본 법인의 임원중 결위가 유할 시는 결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7조(임원의 보선) 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보선하며,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현 행	주무관청 변경승인(2017.4.12.)(안)
<u><신설></u>	<u>제28조(겸직금지) ① 이사는 이 법인의 시설장을 제외한 직원을 겸할 수 없다.</u> <u>② 감사는 이 법인의 이사, 시설장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u>
    <u>제5장 <생략></u>	    <u>제5장 <현행과 같음></u>
<u>제21조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고 대표이사가 차를 소집한다.</u>	<u>제29조(이사회)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u> <u>1. 정기이사회는 매년 3월에 대표이사가 이를 소집한다.</u> <u>2.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 또는 정관 제21조에 의한 감사의 서면요구가 있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이를 소집한다.</u>
<u>제22조 이사회는 매년 1회 3월중에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또는 이사 과반 수 이상의 서면요청이 유할 시는 대표이사는 자체 없이 임시 회의를 개최한다.</u>	<u><삭제></u>
<u>제23조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알려야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다.</u>	<u>제30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 소집은 대표이사가 이사회 개최일 7일 이전에 서면으로 일시, 장소 및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그려하지 아니하다.</u> <u>② 대표이사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 한 때와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u>
<u>제24조 이사 과반 수 이상의 출석을 요구하고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 결의로서 이를 정한다. 단, 가부 동일 수 일시는</u>	<u>제31조(개의와 정족수) ① 이 정관이 따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u>

현 행	주무관청 변경승인(2017.4.12.)(안)
<u>의장이 결하는 바에 의한다.</u>	<p>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 일 경우 의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대리인이나 서면 결 의에 의할 수 없다.</p>
<u>제25조 이사회의 결의 사항은 별도 규정 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다.</u> <u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재산의 취득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u> <u>2. 일시차입금에 관한 사항</u> <u>3. 사업운영 및 계획에 관한 사항</u> <u>4. 수지예산 이외의 중요한 수입 또는 지출에 관한 사항</u> <u>5. 본 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체의 책임 자 진, 퇴에 관한 사항</u> <u>6. 기타 중요한 사항</u> <p>이사중 전기 5호의 직을 겸하고 있는 이사는 합결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p>	<u>제32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 의·의결한다.</u>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정관의 변경에 관한사항</u> <u>2.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u> <u>3. 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u> <u>4. 임원 선출 및 선임에 관한 사항</u> <u>5. 이 법인 운영 시설장 임면에 관한 사 항</u> <u>6. 운영 시설·실무책임자 임면 승인 사항</u> <u>7. 사업계획·실적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u> <u>8.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 항</u> <u>9.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u> <u>10.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u> <u>11. 그밖에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u>
    	<u>제33조(의결 제척사유) 대표이사 또는 이사 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u>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임원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u> <u>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 항으로서 이 법인 임원이 임직원으로 있거나 임원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 되는 사항의 의결에 관련된 이사는 참 여할 수 없으며, 관련 이사의 재정적 인 이해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심의에 들어가야 하며 전원 찬성으 로 의결하여야 한다.</u>
<u>제26조 이사회의 결의 사항으로서 긴급을 요할 시는 이사회 결의를 득할 여유가</u>	<u>제34조(긴급 처리) 이사회의 ----- ----- 요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u>

현 행	주무관청 변경승인(2017.4.12.)(안)
<p><u>없을 시에는 임기의 처리로서 대표이사가 이를 전결 처리하고 즉시 이사회의 주인을 득하여야 한다.</u> <u>단, 정관 제8조 및 제13조, 제25조 제1호, 제2호, 제3조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u></p>	<p><u>를 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이를 전결처리하고 즉시 이사회의 주인을 받아야 한다. 단, 정관 제8조, 제12조 및 재산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u></p>
<u><신설></u>	<p>제35조(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은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법인 홈페이지와 주무관청에서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하며, 법인 사무실에도 비치하여야 한다.</p>
<u><신설></u>	<p>제36조(후원회) 이 법인의 사업을 후원하기 위하여 “원주종합사회복지재단후원회”를 둘 수 있다.</p>
<u><신설></u>	<p>제37조(시설 운영위원회 설치) 이 법인이 유지 경영하는 시설 및 기관의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한 시설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p>
<u><신설></u>	<p>제38조(사무국)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둈다. ②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에 정한다.</p>
<u><신설></u>	<p>제39조(인장) 이 법인의 인장은 ‘별표2’와 같다.</p>
<u><신설></u>	제6장 정관변경 및 시행세칙
<u>제29조 본 정관은 이사회 결의를 경하여 주무장관의 인가를 득하지 않으면 변경 할 수 없다.</u>	제40조(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

현 행	주무관청 변경승인(2017.4.12.)(안)
	아야 한다.
제30조 본 정관 시행에 관한 세칙은 이사회 결의에 별도 이를 정한다.	제41조(세칙) 이 정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운영 규정으로 이를 정한다.
제31조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2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법」과 그 밖의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제6장 해산	제7장 —
제27조 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시는 이 사회의 전원 결의를 경하여 주무장관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제43조(해산 및 합병) 이 법인을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8조 본 법인 해산시의 잔여재산을 이 사회 결의를 경하여 주무장관의 허가를 득한 후, 국가 또는 본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사회사업 기관에 증여한다.	<삭제>
<신설>	제8장 공고 방법
<신설>	제44조(공고의 방법) 이 법인이 법령 및 정관과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이 법인의 게시판 또는 이 법인의 정기간행물에 게재한다.
부 칙	부 칙
<신설>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결의를 거친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제13조 제4호에 의한 이사 정원은 이 정관 시행 이후 최

현 행	주무관청 변경승인(2017.4.12.)(안)
	<u>초로 임원이 선임된 날부터 적용한다.</u>

나. 자산 및 법인사용인장(변동 없음) 기록 생략

다. 시행일 :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한 날부터 시행함.

제2호 의안 우리재단 세칙(2017.4.12.정관반영) 제정건

(의장) 우리 법인 정관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사회자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사회) 우리 법인 변경 정관 제41조(세칙) 규정에 따라 제정(2017.4.12.) 승인된 세칙 규정집(총 15장, 96쪽 문서 별도붙임)에 대하여 2017.12.21. 제6호 의안으로 의결된 세칙안과 변동 없음을 설명하다.

(상임이사 원준호)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자는 의견을 말하다.

(이사 권원식) 동의하다.

(이사 박순모) 재청하다.

(참석이사 전원) 이의 없이 재청하다.

(의장) 참석이사 모두 의견이 같으므로 세칙 제정건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제3호 의안 자신보육원장 선임 및 임기연장의 건

(의장) 우리 법인 소속시설 자신보육원 원장 선임 및 임기연장의 건을 상정하고 의결 제척사유 당사자의 퇴장과 인사위원회 경과보고를 요청하다.

(이사 최효순) 퇴장하다.

(인사위원장 원준호) 우리법인 정관 규정과 세칙(인사규정)에 의거하여 자신보육원 시설장 공개채용 공고(2017.12.22.), 인사위원회 6인(임원 3인, 외부 3개 대학 교수 3인)을 구성하여 1차 서류전형 심사(2018.1.8.), 2차 면접전형 심사(2018.1.10.) 후 최종합격자 1위 최효순 응시자를 공고한 경과에 대해 설명하다.

(의장) 의견을 요청하다.

(이사 박순모) 그동안 자신보육원 아동들의 지도, 양육을 위해 종사자들과 함께 수고해

주셨고, 금 번 공개채용 전형심사결과 1위로 결정된 바, 자신보육원 시설장으로 선임할 것과 임기는 사회복지사업법과 근로기준법, 사회복지시설 관리지침, 그리고 우리법인 시설장 인사규정을 적용하여 임기연장의 건을 승인하자는 의견을 말하다.

(이사 김영일) 동의하다.

(이사 권원식) 재청하다.

(참석이사 전원) 모두 재청하다.

(의장)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이사 최효순) 회의장 입장 후 선임 및 임기연장 승인 의결에 대해 감사 인사를 표하였다.

□ 자신보육원 시설장 선임 및 임기연장 의결 결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선임 및 임기 승인일
최효순	*****	010-*****-2115	선임일 2018.01.23. 승인일 2018.02.01.

제4호 의안 원주종합사회복지관장 선임 및 임기연장의 건

(의장) 우리 법인 소속시설 원주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선임 및 임기연장의 건을 상정하고 의결제척사유 당사자의 퇴장과 인사위원회 경과보고를 요청하다.

(이사 안병표) 퇴장하다.

(인사위원장 원준호) 제3호 의안과 마찬가지로 소속시설장 공개채용 절차 진행과 동일하게 정관 규정과 세칙(인사규정)을 준용하여 시설장 공개채용 공고(2017.12.22.), 인사위원회 6인(임원 3인, 외부 3개대학 교수 3인) 구성 및 1차 서류전형 심사(2018.1.8.), 2차 면접전형 심사(2018.1.10.) 후 최종합격자 1위 안병표 응시자를 공고한 경과에 대해 설명하다.

(의장) 의견을 요청하다.

(상임이사 원준호) 본인은 그동안 우리법인 감사, 이사의 직책을 수행해오면서 금번 공개채용 전형심사결과 1위로 결정된 안병표 현 시설장의 직무수행을 지도·감독해 오며 옆에서 지켜본 결과 복지관 정상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하며, 또한 그 노력한 부분들로 인해 인사위원회 심사결과도 응시자중 1위의

평가점수를 받은 만큼 시설장의 직책을 계속 수행토록 선임할 것과 임기는 사회복지사업법과 근로기준법, 사회복지시설 관리지침, 그리고 우리법인 인사규정에 명시된 규정을 적용하면 된다는 의견을 말하다.

(이사 박순모) 동의하다.

(이사 김영일) 재청하다.

(참석이사 전원) 모두 재청하다.

(의장)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이사 안병표) 회의장 입장 후 선임 및 임기연장 승인 의결에 대해 감사 인사를 표하였다.

□ 원주종합사회복지관 시설장 선임 및 임기연장 의결 결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선임 및 임기연장 승인일
안병표	[REDACTED] ****	010-*****-2420	선임일 2013.05.10. 승인일 2018.02.01.

제5호 의안 우리재단 소속시설에 대한 법인전출금 승인의 건

(의장) 우리 법인 소속시설에 대한 '법인 전출금의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제안 관련 부서의 설명을 요청하다.

(원주종합사회복지관장 안병표) 우리 복지관 2017년도 종사자 시간외 수당 책정액에 대하여 원주시의 지급 불가함 통보와 발생된 인건비 잔액 반환 조치로 복지관 잡수입 통장 잔액 4,186,350원을 원주시에 반환 조치함으로써 복지관 2018년도 연초 기관 운영비가 삭감되어 복지관 세탁차량 운영 등이 어려운 상황임을 설명하다.

(상임이사 원준호) 법인 2018년도 비지정 후원금 이월금액이 7,120,925원으로 5,000,000원을 법인 전출금으로 지원하여 복지관 연초 운영비 충당금으로 사용토록 함이 좋겠다는 의견을 말하다.

(이사 김영일) 동의하다.

(이사 권원식) 재청하다.

(참석이사 전원) 모두 재청하다.

(의장) 법인 비지정 후원금 5,000,000원을 원주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전출금 집행함이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법인 전출금 집행 승인 결과

2018년 이월금	전출금(비지정후원금)	내 역
7,120,925원	5,000,000원	복지관 운영(자부담)비 복지관 세탁차량 운영비

기 타 협 의 사 항

(담당이사 안병표) 법인 및 산하시설의 2017년 결산 보고가 주무관청에 3월 10일 이전에 제출되어야 함으로 2월 중 2017년 감사를 시행하고 정기이사회 일정을 결정하는 의견을 말하다.

(의장) 2017년도 종합 감사 일정과 정기이사회 일정을 조율하다.

(감사 길재민) 2017년 회계 감사는 법인, 자신보육원, 원주종합사회복지관을 1일간 감사하고 날짜는 2월 27일(화) 10시부터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말하다.

(감사 서동표) 감사일정에 동의하다.

(상임이사 원준호) 감사일정은 2월 27일(화)로 정해졌으니 1주후 3월 7일(수)에 정기이사회를 개최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하다.

(이사 김영일) 동의하다.

(이사 권원식) 재청하다.

(참석이사 전원) 모두 재청하다.

(의장) 2017년 법인, 소속시설 감사는 2월 27일(화), 정기이사회는 3월 7일(수)로 결정되었음을 선언하다.

4. 폐회 선언

(의장) 다른 논의 사항을 재차 묻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폐회를 선언하다.

(회의종료 2018.1.23. 17시 40분)

위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들이 다음과 같이 기명날인하다.

강원도 원주시 육판길 1

사회복지법인 원주종합사회복지재단

재직이사 8인, 참석이사 8인



이 사 장 김 원 화



상 임 이 사 원 준 호



이 사 권 원 식



이 사 김 광 권



이 사 김 영 일



이 사 박 순 모



이 사 최 효 순



담당이사 안 병 표



감 사 길 재 민



감 사 서 동 표

